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BL 주상복합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대표번호 : 1688-5800

※ 본 안내문 내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시 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과 관련한 서류접수 방법은 '견본주택 방문접수' 로 진행합니다.
등기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분양홍보관 추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를 참고 바랍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분양홍보관에서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와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개요 안내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58-8,9(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BL 주상복합)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1~46층, 7개동, 총 1,021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868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사전 당첨자 모집공고문 참고(예정일: 2022.07.04. 예정)

■ **경제자유구역 사전청약 특별공급 타입별 대상 세대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총 88세대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경제자유구역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84A	084.9670	29.0587	114.0257	54.8115	168.8372	36	2027년 2월 (예정)
	84B	084.9966	30.6392	115.6358	54.8305	170.4663	30	
	112A	112.9721	36.8906	149.8627	72.8774	222.7401	7	
	112B	112.9810	37.6368	150.6178	72.8832	223.5010	13	
	계						86	

※ 상기 주택공급면적 등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확정 안내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리 바랍니다.

II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분	일정 (예정)	비고
사전청약 특별공급 사전접수	2022년 6월 28일(화) ~ 2022년 7월 3일(일) (6일간)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23, 210호(쓰리엠파크1)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BL 주상복합 분양홍보관) •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누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는 해당기간 내 현장 접수만 인정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2022년 7월 4일(월)	• 일간신문 및 **분양홈페이지 (http://detre-yj.co.kr)**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2년 7월 18일(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09:00 ~ 17:30)**
사전당첨자 발표	2022년 7월 28일(목)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사전당첨자 서류접수	2022년 7월 29일(금) ~ 2022년 8월 5일(금)	•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23, 210호(쓰리엠파크1)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BL 주상복합 분양홍보관) • 사전예약제 운영 예정 • 일정 및 시간은 분양 홈페이지(http://detre-yj.co.kr) 또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참고
사전공급 계약체결	2022년 8월 9일(화) ~ 2022년 8월 12일(금)	•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23, 210호(쓰리엠파크1)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BL 주상복합 분양홍보관)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으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분양홍보관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의 서류접수를 당사 홈페이지(http://detre-yj.co.kr)에서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일자별, 시간별 예약가능한 접수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 서류 미 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분양홍보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사전접수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재직회사	재직회사 발급(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O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회사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사업자등록증 하단부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여부 : 여(V) 부( ) 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된 사업장 명세]도 함께 제출
	O		재직증명서 1부	재직회사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필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O		인사기록카드 1부	재직회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연속하여 재직한 기간 확인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건강보험관리공단 팩스 또는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발급)
	O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O		주택특별 공급신청서	-	소속업체 인감 날인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O		무주택서약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O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O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이름, 청약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부동산원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 이용시간 09:00~17:30) ※모집공고 예정일 기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용도:주택공급신청용)
	O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본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필수
내국인	O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O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배우자 (분리세대)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 전체 포함, 세대구성 및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O		주민등록(표)초본 1부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O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전체포함 (상세발급)
		O	기타	-	추후 동점자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외국인	O		외국인등록증	본인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본인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외 국민	O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본인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O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본인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법인		O	법인인감증명서 1부	회사	법인 신청의 경우 제출
		O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예정일인 2022.07.04(월)(예정) 3개월 이전까지 발행분(세대 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 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접수 가능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 및 미기재,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청약 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Ⅳ 신청자격 및 요건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해당 기업 또는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상 신청 시) 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예정일 이전까지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시 기존 통장으로 재변경이 불가합니다.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입니다.

※ 동·호수 배정은 본 청약 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와 본 청약 당첨자가 함께 추첨 후 배정되며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됩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하여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적용)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단독상속)와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후 일부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일부 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11.19.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에 의거 주택의 공유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공유지분 5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적용) 청약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주민등록표에 등재)한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신청자만 이주하면 됨)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기준지는 청약신청자의 본적지를 의미하며, 상속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적용) 개인주택사업자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해당업무분야에 주택판매나 분양목적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건설이 아닌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개인주택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적용)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적용) 20㎡ 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적용)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청약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적용) 멸실의 경우에는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증빙(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합니다.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적용) 무허가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인정되고 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적용)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서 주택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분양권가격은 계약서상의 공급가격으로 산정) 소형·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2호 이상 보유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적용)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인정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V 대상자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 방법 (※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추후 본 청약 시 선정됩니다.)**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나목을 적용합니다. 본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름.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확정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청약 미신청시 계약불가)
4.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추후 본 청약 시 선정됩니다.
5. 사업주체는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까지 게시하고,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그 선정결과를 통보함.

VI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23, 210호(쓰리엠파크1)' 분양홍보관에서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는 해당 기간 내 현장 접수만 인정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외 타 지역 지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한 경우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특별공급에 있어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중 재직회사 서류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추첨일 이후 사업주체에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주택소유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 2순위 등)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청약 신청은 1세대 1건만 가능**하므로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며,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따라 전매기간이 상이합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심의심사 전으로 전매제한 기간**

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향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상실 및 공급받은 주택의 계약이 취소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재공급하게 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시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인사기록카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류 미제출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타 지역(인천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으로 발령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미충족시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환수 조치)되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종전 근무 기업의 근무 기간 합산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외국인투자기업(A)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현재 외국인투자기업(B) 10개월간 근무 : (B)기업 근무기간만 인정

예시 2) 타 지역의 지사로 발령받은 근무자 신청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A)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최근 1년 이내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본사, 지사)에서 근무한 경우

■ 추정분양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2년 7월 4일(월) 공고 예정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BL 주상복합' 분양홍보관 및 안내서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분양문의 : 1688-5800 홈페이지: http://detre-yj.co.kr

VII 참고자료

■ 조감도



■ 단지배치도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 소			
연 락 처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근 무 부 서		직 책 및 직 위	
소 재 지 주 소			☎( ) -
근 무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2. 가족사항(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작성이 가능함.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구	위 치	신청주택형 (하나만 선택하여 “V” 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58-8,9번지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BL 주상복합)	□ 84A □ 84B □112A □112B

4. 첨부서류

공통서류	확인	내국인	확인	외국인, 재외국민	확인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원본대조 필)	☐	1. 신분증 사본	☐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 필)	☐	2. 주민등록표등본(본인)	☐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외국인)	☐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의 경우)	☐	3. 가족관계증명원(본인)	☐	3.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재외국민)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의 경우)	☐	4.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	4.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재외국민)	☐
5. 재직증명서(소속업체 인감 날인)	☐	5. 주민등록표초본(본인)	☐		
6. 인사기록카드(원본대조 필)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번호 포함 전체발급)	☐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업체 인감 날인)	☐				
9.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소속업체 인감 날인)	☐				
10. 무주택서약서(신청인 본인 인감 날인)	☐				
1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	☐				
12.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 이용시간 09:00 ~ 17:30)	☐				
13. 기타 (특별공급 접수를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서류)	☐				

※ 해당사항에 괄호 안에 “V”로 표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 (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속업체 :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무주택 서약서

신청아파트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BL 주상복합		
성 명	(인)	신청주택형	□ 84A □ 84B □112A □112B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상기 본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당첨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 등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 및 동·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확 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 07 . 04 .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소형저가 주택은 일반 공급에서 해당하며 특별공급 신청 시 유주택임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됨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에 따름(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인)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인)

2022 년 월 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시 신청인 :_____(인)

대리 신청시 대리인 :_____(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개인정보수집 · 활용 동의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사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 활용 동의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활용 미동의 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정보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연락처			
주소	시 구 동		

▣ 개인정보 수집 · 활용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디비종합건설, 디비주택 및 대방건설의 자회사(대방하우징, 대방건설동탄, 대방디엠시티, 노블랜드, 대방토건, 대방이엔씨, 대방이노베이션, 디엠개발, 대방개발기업, 디비개발, 대방일산디엠시티, 대방주택, 엔비건설, 디비건설 대방산업개발, 대방산업개발동탄)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항목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개인정보 및 제출된 서류 일체
개인정보의 수입 · 활용목적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BL 주상복합”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3년 또는 개인정보 제3자가 제공 동의 철회 전까지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입 · 활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하실 경우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신청인본인성명 (인감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21 - 42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1조(목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이하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 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5호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의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대상자 인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포함한다)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경제자유구역 내 연구

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2. “종사자 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 기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약국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기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의함)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특별공급을 받는 사실이 없는 경우.
2.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특별공급 신청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공급을 하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접수된 특별공급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확인 후 일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통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5. 재직증명서
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7. 특별공급신청서
8. 무주택서약서
9.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내국인〕

1. 신분증
2.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3.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
4. 주민등록표등본(본인)
5.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단 세대 분리된 경우에 한함)
6. 주민등록표초본(본인)
7.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1. 외국인등록증
2. 국내거소 신고 사실 확인서

제7조(자격의 확인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5조제2항에 의한 특별공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자격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신청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외국인

2. 공고일 기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해당기업에 장기근속(경제자유구역 내 연속하여 근무)한 자
3. 공고일 기준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 자
4. 주민등록법상 인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 거주한 자

제9조(입주자 선정 방법) 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1회에 한하여 선정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는 이 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① 사업주체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 제출은 당첨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전매행위 등의 제한)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의 상실 등) 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 받은 자가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다.**

②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은 본 기준으로 대체 적용한다.